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0. 11. 21.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비를 재원으로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정부 규제개혁 모델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어렵고 관료주의적인 용어를 쉽고 통상적인 용어로 수정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골자

-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에서

제1항 : 지령서 → 교부결정 통지서

제2항 : 보조지령전에 → 보조결정통지전에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제1항 중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로 한다.

안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제2항 중 “보조지령전에”를
보조결정통지전에”로 한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결정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u>지령서</u>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u>교부결정통지서</u>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② <u>보조지령전에</u>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② <u>보조결정통지전에</u>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